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21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누526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8. 6. 7. 선고 2017구합70435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1. 26.
판 결 선 고	2018. 12. 1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 8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0,940,740원, 지방교육세 10,274,770원, 농어촌특별세 5,137,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21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가.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의 "165,566,056원"을 "1,605,566,056원"으로 고쳐 쓴다).

나.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, 갑 제2호증의 1, 갑 제8호증,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을 700억 원으로 약정하고(제2조) 이에 더하여 매매부동산의 명도나 철거 및 기타 제한물권 등(근저당권, 가처분, 가압류 및 유치권 등)도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(제8조)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이 사건 대출이자 외에 대출거래와 관련한 담보 및 신탁을 설정, 유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,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자와 이 사건 신탁보수료를 모두 지급하고 2014. 4. 18.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이자에 대하여 원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자를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지급한 점,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의 경우 일률적으로 취득가격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신탁계약의 유형과 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가격 포함 여부가 정해지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21

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배광국

판사 김종기

판사 송혜정